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행정부문 : 1,524 명
2. 의회행정부문 : 57 명
3. 소방행정부문 : 820 명
4. 교육행정부문 : 41 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충청북도의 본청,의회사무처,직속기관,사업소·출장소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둔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
다만, 초과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(한시정원) 이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정원 23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